

세법연구 15-01

물납제도 운용현황 및 주요국과의 비교 연구

2015.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상 엽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전문연구원

김 민 경 연 구 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 물납제도 및 운영현황	9
1.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9
가. 조세납부방법	9
나. 세목별 물납제도	11
다. 물납제도 개정연혁	19
2. 물납제도 운용현황	22
가. 전체 물납현황	22
나. 세목별 물납현황	27
다. 물납세액 처분현황	31
라. 물납제도의 문제점	34
III. 주요국의 조세납부제도 및 물납제도 운영현황	40
1. 일본	40
가. 조세납부방법	40
나. 물납제도	40
다. 물납현황	54
2. 영국	60
가. 조세납부방법	60
나. 물납제도	61
3. 프랑스	62
가. 조세납부방법	62

나. 물납제도.....	63
4. 독일.....	63
가. 조세납부방법.....	63
나. 물납제도.....	64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65
1. 국제비교.....	65
가. 물납가능 세목과 대상재산 및 신청요건.....	65
나.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및 물납 한도액.....	67
다. 물납 부적격자산.....	68
라. 물납현황 비교.....	70
2. 시사점.....	72
가. 대체적 납부수단으로서의 물납제도.....	72
나. 물납 신청요건의 구체적인 판단규정 마련.....	73
다. 국고손실 방지를 위한 물납의 적용 범위 조정.....	73
라. 동산의 물납 허용에 대한 검토.....	75
마. 물납실적이 저조한 세목의 물납제도 폐지 고려.....	77
참고문헌.....	79

표목차

〈표 II-1〉 우리나라의 조세납부방법.....	11
〈표 II-2〉 우리나라의 세목별 물납제도.....	18
〈표 II-3〉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개정연혁.....	21
〈표 II-4〉 국세 대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23
〈표 II-5〉 연도별 및 세목별 물납현황(2005~2013년).....	25
〈표 II-6〉 재산종류별 국세물납 현황(2001~2013년).....	26
〈표 II-7〉 상속세의 재산종류별 물납현황(2006~2013년).....	28
〈표 II-8〉 증여세의 재산종류별 물납현황(2006~2013년).....	29
〈표 II-9〉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의 물납현황(2006~2013년).....	31
〈표 II-10〉 물납부동산의 처분현황.....	32
〈표 II-11〉 물납상장주식의 처분현황.....	33
〈표 II-12〉 물납 비상장주식의 처분현황.....	34
〈표 II-13〉 물납주식의 관리 · 처분 부적당 여부 판단 사례.....	36
〈표 II-14〉 물납토지의 관리 · 처분 부적당 여부 판단 사례.....	37
〈표 II-15〉 물납자산의 국고손실 사례.....	38
〈표 III-1〉 물납가능재산의 물납 충당 우선순위.....	43
〈표 III-2〉 물납허가 한도액.....	50
〈표 III-3〉 연부연납 허가 한도액.....	50
〈표 III-4〉 상속세의 연납기간 및 연납이자.....	54
〈표 III-5〉 상속세의 물납처리 현황(건수).....	56
〈표 III-6〉 상속세의 물납처리 현황(금액).....	56
〈표 III-7〉 물납재산 유형별 현황(건수).....	58

〈표 Ⅲ-8〉 물납재산 유형별 현황(금액).....	58
〈표 Ⅲ-9〉 상속 중 물납 및 연부연납의 비율.....	59
〈표 Ⅳ-1〉 물납가능 세목과 물납가능자산 및 신청요건.....	67
〈표 Ⅳ-2〉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및 물납 한도금액.....	68
〈표 Ⅳ-3〉 한국과 일본의 물납 부적격자산.....	69
〈표 Ⅳ-4〉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 물납현황 비교.....	71

그림목차

[그림 Ⅱ-1] 연도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23
[그림 Ⅱ-2] 세목별 물납세액 추이(2005~2013년).....	24
[그림 Ⅱ-3]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27
[그림 Ⅱ-4] 상속세의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28
[그림 Ⅱ-5] 증여세의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추이.....	30
[그림 Ⅲ-1] 물납 신청건수 및 금액 추이.....	55

I. 서론

-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재산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조세납부방법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청에는 조세징수권을 확보하는 이점을 제공함
 - 물납의 역사는 과거에 곡물이나 용역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형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 현행 조세법상 물납의 형태가 도입된 것은 1950년 「상속세법」에서 명문화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음
 - 이후 법인세는 1979년, 양도소득세는 1995년, 재산세는 1999년에 각각 물납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종합부동산세에도 물납제도가 적용됨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세목에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물납제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최근 5년간 수납된 물납세액이 1조 2,910억원에 달하고, 이중 매각되어 현금화된 자산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31억원에 불과하며,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산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¹⁾
 - 또한 최근 5년간 물납재산의 매각실태를 보면, 부동산의 경우 손실률이 21.6%, 비상장주식의 경우 40.7%에 달해 재정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²⁾

-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세목에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3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체물납건수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목에서의 물납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1) 2014년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자료 참조

2) 『국세일보』, 2014. 12. 17.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7685>)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총액에서 물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속세가 10.73%, 증여세가 7.06%임
-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세목에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에 집중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물납 실적은 없는 상황에서 물납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세목에서 물납을 허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에 한해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의 물납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³⁾
 - 개정 건의안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물납 신청을 허가하고, 물납제도의 필요성이 낮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금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도 물납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물납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이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 그 이유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납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통해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외국의 물납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물납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물납제도를 소개한 후 제Ⅳ장에서는 외국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3)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함(2014. 12. 15.)

Ⅱ. 우리나라 물납제도 및 운영현황

1.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가. 조세납부방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세 납부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납부 외에 다양한 조세납부제도를 운영 중임
- 조세납부방법으로는 현금납부의 변형된 형태인 신용카드 납부와 조세납부수단의 변경을 허용하는 물납이 있으며, 조세채무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음
-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부족 시 카드로 납부하여 체납가산금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됨
 - 기존에는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납부세액한도를 폐지하여 금액한도 없이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함
 - 단,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1%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함
-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은 다음과 같음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 법인세를 제외한 국세의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이며, 법인세의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임

-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상속세의 연부연납기한 한도:
 - 일반재산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이내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임
 - 증여세의 연부연납기한 한도:
 - 재산구분 없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임
 - 또한 연부연납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과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분할납부 세액에 연부연납가산금을 부과함
 - 연부연납가산금은 분할납부세액에 2.5%의 이자율을 적용함
 - 매회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 물납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물납제도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조세채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현금 대신 물납하도록 하여 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음
 - 물납허용조건 및 물납가능재산은 각 세목별로 상이함

〈표 II -1〉 우리나라의 조세납부방법

	금전납부 (신용카드 납부 포함)	납부방법 변경	납부기한 연장	
		물납	분할납부	연부연납
납부가능 세목	모든 세목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모든 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허용 조건	없음	세목별로 상이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납부가능 세액	납부세액 전액	납부세액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 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납부세액 전액

나. 세목별 물납제도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제도

가) 물납허용조건⁴⁾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
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허용함

나) 물납가능재산과 우선순위⁵⁾

-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며 구체적인 물납가능자산은 아래와 같음
 - 부동산: 국내 소재 부동산
 - 유가증권:
 - － ① 국채·공채·주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5)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74조

-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⁶⁾
-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자산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규정을 두어 일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함
-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의 경우 물납대상자산에 포함됨
 -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에 한해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도 상속세 물납에 충당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함
-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함
- ① 국채·공채
 - ② 상장유가증권(국채·공채 제외)
 - 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제외)
 - ④ 비상장주식
 - 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다) 물납의 신청⁷⁾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신청가능함
-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임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임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7)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70조

-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상속세 물납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물납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물납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봄

- 물납을 허가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의 범위에서 물납 수납일을 지정해야 함
 -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이유로 해당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수납일을 재지정할 수 있음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 신청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 연부연납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첫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을 허용함

라) 물납재산의 변경

- 아래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경우 관리 및 처분의 부적당성으로 인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음(상증세령 §71)
 - 부동산:
 -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②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③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 및 부수토지⁸⁾
 - ⑤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⁷⁾
 - 유가증권:
 - ①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주식⁷⁾

8)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규정되어 있음

-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속·증여 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여야 함(상증세령 §72)

마) 물납한도액 및 수납가액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액을 한도로 함⁹⁾
 - 단, 납부한도액에 충당할 적합한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을 허가함
- 또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물납 신청 전까지 기간 동안 해당 상속·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은 물납가능세액에서 제외함¹⁰⁾
-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수납가액을 조정함¹¹⁾
 - 상속 및 증여일로부터 수납일까지 기간 중 신주가 발행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연부연납기간 중 첫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 물납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기준 유가증권 가액에 비해 50% 이상 하락한 경우

9) 상증세령 §73조①, §73조②

10) 상증세령 §73조③

11) 상증세령 §75조

2)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

가) 물납허용조건

-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물납을 허용함(소득세법 §112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보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이 가능함¹²⁾
 - 단,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1억원에 양도소득세액만큼 가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¹³⁾
- 물납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함(소득세령 §175조의2 ③)

나) 물납가능재산¹⁴⁾

- 물납가능재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의 물납만 허용함

다) 물납의 신청¹⁵⁾

-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의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전일까지 물납 허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3⑦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②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1항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4항, 5항

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

가) 물납허용조건¹⁶⁾

-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용함

나) 물납가능재산¹⁷⁾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능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산정함
 - 과세기준일의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 공신력 있는 시가 자료가 있는 경우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시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다) 물납의 신청¹⁸⁾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신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인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할 수 있음
-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물납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봄

16)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라) 물납재산의 변경¹⁹⁾

-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가능재산으로 변경하여 다시 물납을 신청해야 함
-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과 동일함²⁰⁾

4) 법인세의 물납제도

가) 물납허용조건

-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세액의 물납을 허용함(법인세법 §65)
-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함(법인세령 §102③)

나) 물납가능재산²¹⁾

- 물납가능재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의 물납만 허용함

다) 물납의 신청

- 법인의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법인세령 §102④)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4조, 15조

20) 본 보고서 제2장에 기술된 '양도소득세 물납재산의 변경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전일까지 물납 허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인세령 §102⑤)

5) 세목별 물납제도 비교

- 우리나라의 세목별 물납제도를 비교하여 <표 II-2>에 제시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물납허용 조건 및 물납가능자산에 차이가 있음

<표 II-2> 우리나라의 세목별 물납제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도입 연도	1950년	1995년	2005년	1979년
물납 신청 조건	1)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2) 상속·증여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고, 2) 양도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고, 2) 양도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 가능 자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물납에 총당함 ① 국채, 공채 ② 상장유가증권 ¹⁾ ③ 국내소재부동산 ④ 비상장주식 ²⁾ ⑤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토지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³⁾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
물납 신청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의 10일전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10일전까지
물납 허가 기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3개월) 이내 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일까지

주: 1)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 발행 수익증권 포함됨. 또한 상장주식 중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함
2) 상속에 한해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의 경우 ①~③의 자산에 의해서도 물납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함
3) 2013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만 물납가능자산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납부가능 물납자산대상 확대
4) 연부연납의 첫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물납제도 개정연혁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 개정연혁

- 2000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물납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상증세령 §74)
 - 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현금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현금화하여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함
 - 단,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의 물납을 허용함

- 2003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도 상장 유가증권을 물납하도록 허용함(상증세령 §74)
 - 이는 최초로 상장되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당장 현금화하여 세액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하였음

- 2005년부터 상속·증여일로부터 물납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상증세령」 제71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함
 - 이는 부동산이 비상장주식보다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물납충당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하여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규정을 신설함

- 2008년부터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 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상증세법 §73①)
 - 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가액과 실제 매각금액 차이에 따라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기인함
 - 단,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속에 한해서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함

- 2013년부터 다른 상속 및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물납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상증세령 §74)
 - 기존에 다른 상속 및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물납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현금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금화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함

- 2014년부터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상속 및 증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용하던 것을 2천만원 초과 시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여 물납허용 조건을 강화함(상증세법 §73①)
 - 금전납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연부연납의 허용조건이 물납의 허용조건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물납을 선택할 유인이 더 큼
 - 세법개정 당시 연부연납 허용조건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반면 물납허용 조건은 1천만원 초과였음
 - 이는 금전납부 원칙 측면에서 모순이므로 연부연납과 연계성을 갖도록 물납의 허용 조건을 연부연납 기준과 동일하게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2) 「종합부동산세법」상 물납제도 개정연혁

- 2008년 2월 22일부터 기존에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하던 것에서 수납가액을 물납부동산의 시가로 변경함(종합부동산세령 제13조 제2항)
 - 물납부동산의 공시가격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수납가액, 공매가격, 감정가액 등 공신력 있는 시가자료가 있는 경우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수납가액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됨
 - 이를 통해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2013년 2월 22일부터 물납가능 재산의 범위를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함(종합부동산세법령 §13①)

- 기존에는 물납가능재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만 포함되어 물납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함

3) 세목별 개정연혁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물납허용자산 범위 축소 및 물납허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물납허용자산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물납허용하던 것을 2천만원 초과 시 물납을 허용하도록 개정함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는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 기존에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하던 것에서 시가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킴
 -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부동산만 물납허용하던 것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물납허용 범위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개정연혁

시행연도	관련 법규정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	2000	상증세령 §74	한국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을 물납대상 자산에서 제외함
	2003	상증세령 §74	상장유가증권 중 최초로 상장된 유가증권이나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의 물납을 허용함
	2005	상증세령 §73③	물납충당재산이 상속·증여일로부터 물납 신청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증여세액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음
	2008	상증세법 §73①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자산에서 제외함 (단, 비상장주식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표 II-3〉의 계속

시행연도		관련 법규정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	2013	상증세령 §74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장유가증권의 물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 삭제함
	2014	상증세법 §73①	물납허용조건 강화(납부세액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종합부 동산세	2008	종합부동산세령 §13②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함
	2013	종합부동산세령 §13①	종합부동산세 물납 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 허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2. 물납제도 운용현황

가. 전체 물납현황

- 우리나라의 물납세액은 2013년 기준 371,428백만원으로 전체 국세의 0.18%를 차지하고 있음
- 물납세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2008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 들어 다소 증가함
 - 이는 2007년 세법개정으로 2008년 2월 22일 이후 상속·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상속·증여세액의 비상장주식 물납이 제한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물납세액 증가가 전체 물납세액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이는 상속세의 비상장주식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반면 증여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아예 불가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임

〈표 II-4〉 국세 대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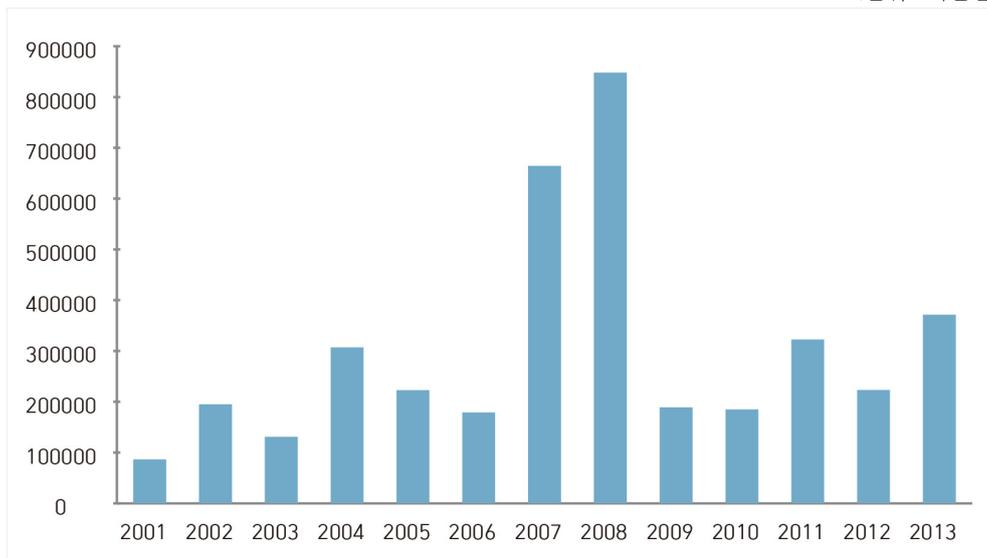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국세	물납세액	비중
2001	95,792,800	86,539	0.09
2002	103,967,800	195,121	0.19
2003	114,664,200	130,903	0.11
2004	117,795,700	307,115	0.26
2005	127,465,700	222,764	0.17
2006	138,044,300	178,992	0.13
2007	161,459,100	664,507	0.41
2008	167,306,000	847,890	0.51
2009	164,540,700	188,931	0.11
2010	177,718,400	184,908	0.10
2011	192,381,200	322,655	0.17
2012	203,014,900	223,133	0.11
2013	201,906,500	371,428	0.18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1] 연도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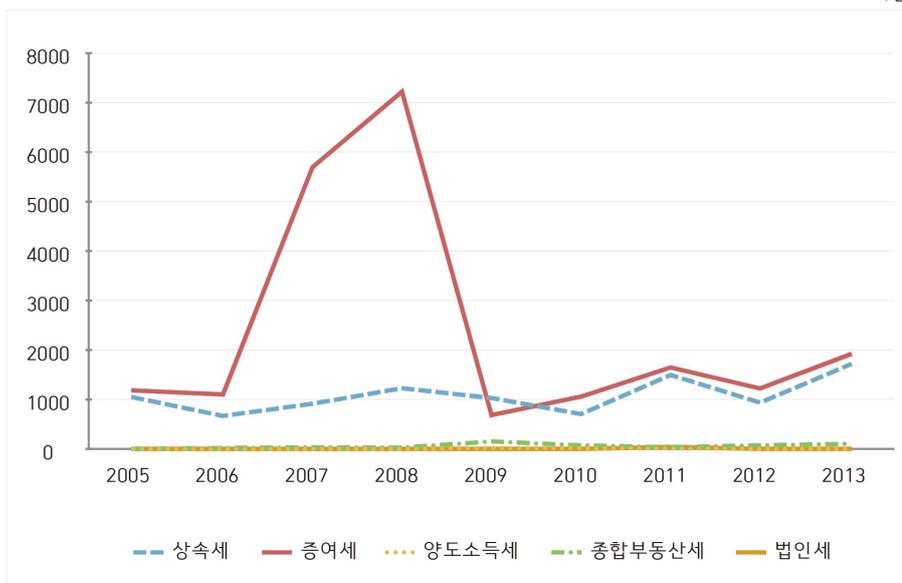
- <표 II-5>에 제시된 세목별 물납세액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세액이 전체 물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상속세의 물납비중은 45.84%, 증여세의 물납비중은 51.38%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물납비중은 2.78%,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물납실적은 없음

- 최근 8년간 세목별 물납세액 추이를 보면 모든 세목의 경우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임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여세의 물납세액이 상속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부터 증여세 물납세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물납세액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각 세목별 세수총액에서 물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상속세가 10.73%, 증여세가 7.06%이며 나머지 세목은 총 세수액에서 물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 세목별 물납세액 추이(2005~2013년)

(단위: 억원)



〈표 II-5〉 연도별 및 세목별 물납현황(2005~2013년)

(단위: 건,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속세	건수	81	44	62	98	107	89	77	105	139
	물납총액 (비중) ¹⁾	1,042 (46.78)	667 (37.27)	915 (13.77)	1,228 (14.48)	1,029 (54.48)	705 (38.13)	1,496 (46.38)	936 (41.94)	1,703 (45.84)
	세수총액 (비중) ²⁾	7,020 (14.85)	8,676 (7.69)	10,590 (8.64)	11,817 (10.39)	12,207 (8.43)	12,028 (5.86)	12,586 (11.89)	17,185 (5.45)	15,865 (10.73)
증여세	건수	226	199	284	392	176	110	85	118	51
	물납총액 (비중) ¹⁾	1,184 (53.13)	1,103 (61.61)	5,697 (85.74)	7,224 (85.2)	685 (36.23)	1,058 (57.22)	1,648 (51.07)	1,222 (54.77)	1,908 (51.38)
	세수총액 (비중) ²⁾	11,709 (10.11)	15,216 (7.25)	17,830 (31.95)	15,953 (45.28)	12,096 (5.66)	18,733 (5.65)	20,741 (7.94)	23,020 (5.31)	27,032 (7.06)
양도 소득세	건수	1	1	1	0	1	3	2	0	0
	물납총액 (비중) ¹⁾	2 (0.09)	1 (0.03)	1 (0.02)	0 (0)	23 (1.23)	13 (0.7)	6 (0.18)	0 (0)	0 (0)
	세수총액 (비중) ²⁾	44,522 (0)	79,205 (0)	112,921 (0)	93,251 (0)	73,079 (0.03)	81,633 (0.02)	73,894 (0.01)	74,552 (0)	66,571 (0)
종합 부동산세	건수	0	7	7	13	9	9	5	9	10
	물납총액 (비중) ¹⁾	0 (0)	20 (1.09)	32 (0.48)	27 (0.32)	152 (8.06)	73 (3.95)	35 (1.07)	73 (3.29)	103 (2.78)
	세수총액 (비중) ²⁾	441 (0)	13,275 (0.15)	24,143 (0.13)	21,299 (0.13)	12,071 (1.26)	10,289 (0.71)	11,019 (0.31)	11,311 (0.65)	12,243 (0.84)
법인세	건수	0	0	0	0	0	0	1	0	0
	물납총액 (비중) ¹⁾	0 (0)	0 (0)	0 (0)	0 (0)	0 (0)	0 (0)	42 (1.3)	0 (0)	0 (0)
	세수총액 (비중) ²⁾	298,055 (0)	293,622 (0)	354,173 (0)	391,545 (0)	352,514 (0)	372,682 (0)	448,728 (0.01)	459,318 (0)	438,548 (0)
전체	건수	308	251	354	503	293	211	170	232	200
	물납총액	2,228	1,790	6,645	8,479	1,889	1,849	3,227	2,231	3,714
	세수총액	365,718	409,995	519,656	533,865	461,968	495,366	566,967	585,385	560,260

주: 1) 각 세목별 물납세액/전체물납세액 × 100

2) 각 세목별 물납세액/각 세목별 총 세수액 ×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각 연도

- <표 II-6>에 제시된 재산종류별 물납현황을 보면 주식의 물납세액이 전체 물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부동산의 물납세액비중은 63.22%로 주식의 36.22%에 비해 훨씬 컸으나 2002년 주식의 물납세액비중은 81.31%로 2002년부터 주식의 물납세액이 크게 증가함
 - 부동산의 물납세액은 2002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5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이전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부터 부동산 물납세액이 다시 증가함
 - 채권의 물납세액은 2009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물납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6〉 재산종류별 국세물납 현황(2001~2013년)

(단위: 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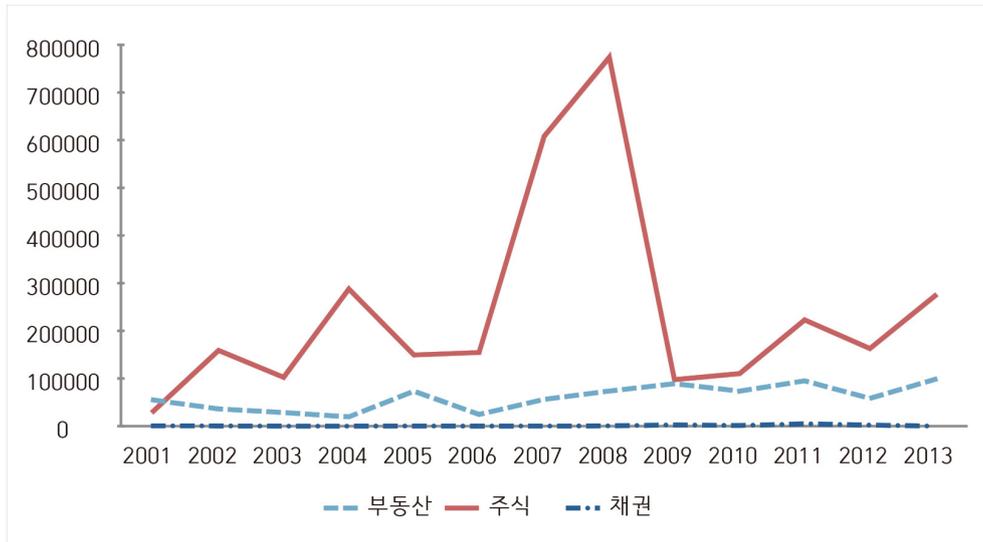
	부동산			주식			채권			전체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2001	103	54,714	63.22	22	31,345	36.22	1	480	0.55	126	86,539
2002	56	36,092	18.49	99	158,724	81.31	4	396	0.20	159	195,212
2003	40	28,443	21.73	148	102,460	78.27	0	0	0.00	188	130,903
2004	27	19,416	6.32	253	287,699	93.68	0	0	0.00	280	307,115
2005	61	73,292	32.90	246	149,270	67.01	1	202	0.09	308	222,764
2006	37	24,506	13.69	213	154,428	86.28	1	58	0.03	251	178,992
2007	56	56,180	8.45	297	608,195	91.53	1	132	0.02	354	664,507
2008	101	73,611	8.68	402	773,776	91.26	0	503	0.06	503	847,890
2009	105	88,983	47.10	186	97,474	51.59	2	2,474	1.31	293	188,931
2010	99	73,436	39.71	109	110,167	59.58	3	1,305	0.71	211	184,908
2011	73	95,049	29.46	94	222,828	69.06	3	4,778	1.48	170	322,655
2012	107	58,201	26.08	125	162,768	72.95	*1)	2,164	0.97	232	223,133
2013	131	98,043	26.40	69	273,385	73.60	0	0	0.00	200	371,428

주: 1) 『국세통계연보』상 데이터가 누락됨

자료: 『국세통계연보』,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각 연도

[그림 II-3]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추이(2001~2013년)

(단위: 백만원)



나. 세목별 물납현황

1) 상속세의 물납현황

- <표 II-7>에 제시된 상속세의 재산종류별 물납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부동산의 물납세액은 853억원, 주식의 물납세액은 850억원으로 부동산과 주식의 물납세액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의 물납세액이 부동산 물납세액보다 더 높았으나 2008년부터 부동산의 물납세액이 주식의 물납세액보다 높아졌으며, 2012년부터 주식과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실적이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식물납세액의 경우 2008년 세법개정 이후 2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주식물납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속세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과 다른 비상장주식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주식 물납세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 II-7〉 상속세의 재산종류별 물납현황¹⁾(2006~2013년)

(단위: 건, 억원, %)

	부동산			주식			채권			전체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2006	21	192	28.79	23	475	71.21	-	-	-	44	667
2007	39	425	46.45	23	490	53.55	-	-	-	62	915
2008	74	659	53.66	24	564	45.93	* ²⁾	5	0.41	98	1,228
2009	89	701	68.06	17	327	31.75	1	2	0.19	107	1,030
2010	78	557	79.01	11	148	20.99	* ²⁾	0.1	0.01	89	705
2011	61	895	59.83	16	601	40.17	-	-	-	77	1,496
2012	83	482	51.55	22	432	46.20	* ²⁾	21	2.25	105	936
2013	113	853	50.09	26	850	49.91	-	-	-	139	1,703
합계	558	4,764	54.89	162	3,887	44.79	1	28	0.32	721	8,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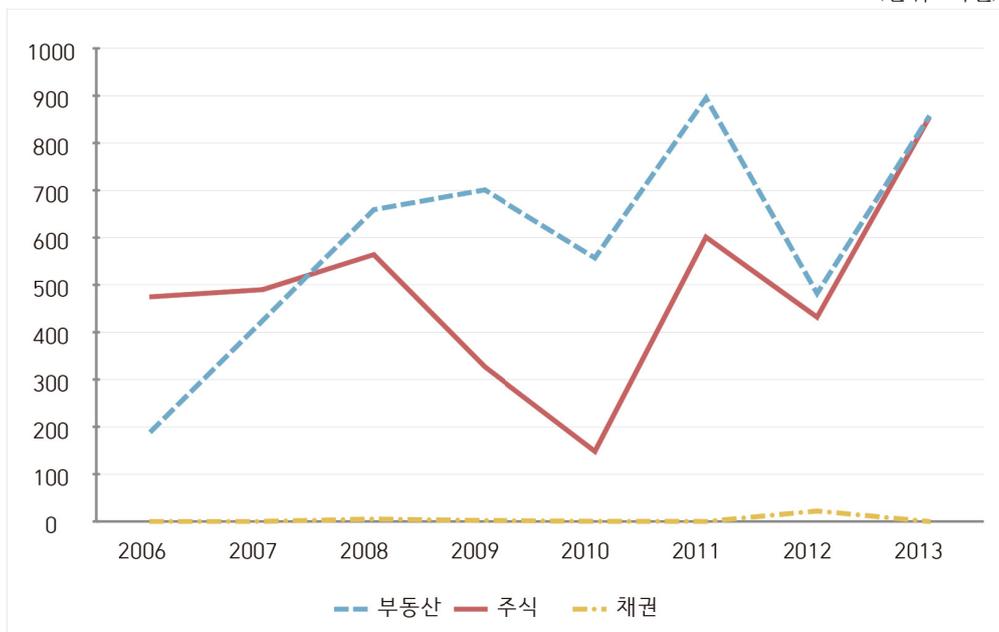
주: 1) 2006년 이전에는 각 세목별로 재산종류를 구분하여 물납세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2006년도 데이터부터 제시함

2) 『국세통계연보』상 데이터가 누락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4] 상속세의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단위: 억원)



2) 증여세의 물납현황

- 증여세의 경우 주식의 물납세액이 증여세 전체 물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증여세의 주식납부액은 1,884억원, 부동산납부액은 25억원으로 각각 전체 증여세 물납액의 98.7%,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이전에도 주식의 물납세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7년, 2008년에 주식의 증여세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 2월 22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제한되기 때문에 세법개정 이전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는 것에 기인함

- 2009년 이후로 주식의 물납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비상장주식이 물납가능재산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II-8〉 증여세의 재산종류별 물납현황(2006~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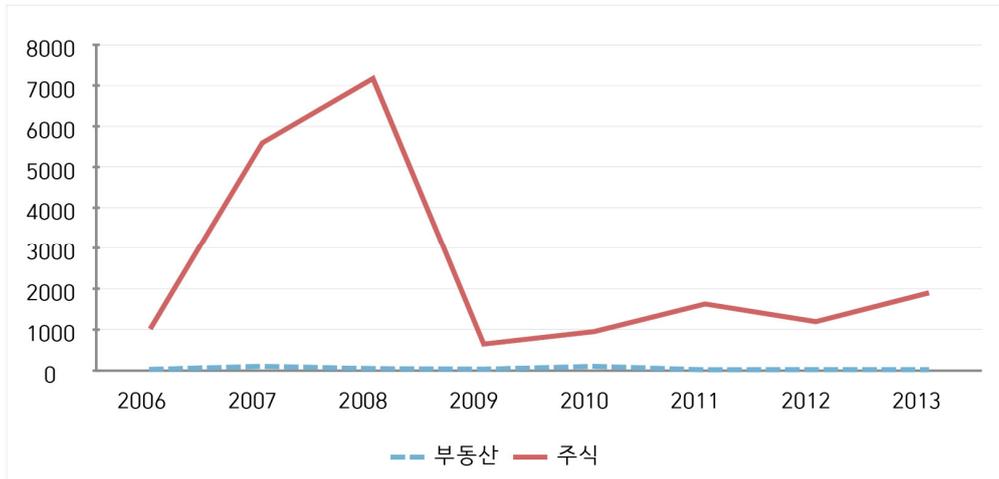
(단위: 건, 억원, %)

	부동산			주식			전체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2006	9	33	2.99	190	1,069	97.01	199	1,102
2007	10	106	1.85	274	5,592	98.15	284	5,697
2008	14	50	0.69	378	7,174	99.31	392	7,224
2009	7	37	5.4	169	648	94.6	176	685
2010	12	105	9.92	98	953	90.08	110	1,058
2011	7	21	1.27	78	1,627	98.73	85	1,648
2012	15	27	2.21	103	1,195	97.79	118	1,222
2013	8	25	1.31	43	1,884	98.69	51	1,909
전체연도	82	404	1.96	1,333	20,142	98.04	1,415	20,54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5] 증여세의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추이

(단위: 억원)



3)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의 물납

-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 수용 시 보상받은 채권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채권과 부동산의 물납실적만 <표 II-9>에 제시함
-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1년 이후 물납실적이 없으며 2011년 이전에도 물납건수는 평균 2건으로 물납 이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물납실적이 꾸준히 있으며 2009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2011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 물납세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당 물납액이 2009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물납수납가액을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산정하도록 변경한 것에 기인함
- 법인세의 경우 물납실적은 2011년에 1건으로 물납 이용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의 물납현황(2006~2013년)

(단위: 건, 백만원)

	양도소득세(채권)		종합부동산세(부동산)		법인세(채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	1	58	7	1,959	-	-
2007	1	132	7	3,170	-	-
2008	-	-	13	2,707	-	-
2009	1	2,323	9	15,222	-	-
2010	3	1,298	9	7,307	-	-
2011	2	587	5	3,463	1	4,191
2012	-	-	9	7,330	-	-
2013	-	-	10	10,333	-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물납세액 처분현황

- 물납허가 통지 이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물납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되어 처분됨
 - 물납 부동산의 경우 매각수의, 매각입찰, 무상관리 전환, 무상양여, 수용 및 보상, 유상관리 전환으로 처분되며 주로 매각수의, 매각입찰, 무상관리 전환의 방법으로 처분됨²²⁾
 - 물납 유가증권의 경우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하여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 비상장주식은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함
 - 일반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처분함
- 〈표 II-10〉에 제시된 물납부동산의 처분현황을 보면 부동산의 경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처분이익이 발생했으나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에는 약 95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손실률은 평균 17%인 것으로 나타남

22) 노영훈·강성훈(2014), p.42.

- 또한 수납시점과 매각시점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여 최근 3년 동안 물납수납에서 처분까지 평균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 -10〉 물납부동산의 처분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년)

수탁연도	건수	물납금액 (A)	매각금액 (B)	처분손익	회수율 (B/A)	시차 ¹⁾
2001	107	18,262	45,596	27,334	249.68	8.5
2002	59	18,430	24,800	6,369	134.56	7.4
2003	23	5,939	9,454	3,515	159.19	6.3
2004	26	2,897	3,627	730	125.20	4.4
2005	39	2,950	6,997	4,047	237.19	3.5
2006	51	7,280	13,091	5,811	179.82	3.5
2007	72	9,237	15,215	5,978	164.72	3.2
2008	64	9,370	7,957	-1,413	84.92	1.5
2009	138	31,227	35,748	4,521	114.48	1.5
2010	68	18,803	17,498	-1,305	93.06	0.9
2011	68	20,517	16,692	-3,825	81.36	0.5
2012	89	26,004	21,592	-4,412	83.03	0.5
2013	88	24,195	20,500	-3,696	84.73	0.0
연평균	69	15,009	18,367	3,358	122.37	3.2
3개년 연평균	82	23,572	19,595	-3,978	83.13	0.3

주: 1) 시차는 물납수납시점에서 매각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노영훈·강성훈, 『물납 매각대금의 조세수입 전환 타당성 검토』, 2014. 9. p.37 인용

- 상장주식의 경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처분이익과 손실이 번갈아 발생하였으나 2010년부터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처분손실액은 약 49억원으로 처분손실률은 평균 31%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2010년의 상장주식 매각금액이 현저히 낮아 처분손실률이 커진 것이 반영되어 최근 3개년의 처분손실률이 낮아진 것임
 - 최근 2년간 처분손실률은 2011년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7년 이후로 수납시점과 처분시점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II-11〉 물납상장주식의 처분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년)

수탁연도	건수	수량	물납금액 (A)	매각금액 (B)	처분손익	회수율 (B/A)	시차
2001	38	677	7,127	5,152	-1,975	72.29	0.82
2002	37	986	3,331	4,346	1,016	130.47	0.00
2003	172	1,170	35,578	27,221	-8,357	76.51	0.08
2004	205	3,892	21,603	23,685	2,082	109.64	2.04
2005	2	52	328	17	-311	5.18	0.00
2006	25	779	11,153	4,178	-6,975	37.46	4.76
2007	373	476	55,239	64,353	9,114	116.50	5.05
2008	196	783	58,468	36,625	-21,843	62.64	4.27
2009	126	4,486	5,661	9,851	4,191	174.02	3.14
2010	14	99	3,517	790	-2,727	22.46	2.21
2011	85	1,974	13,311	13,291	-21	99.85	1.33
2012	148	1,456	13,324	11,170	-2,154	83.83	0.76
연평균	118	1,403	19,053	16,723	-2,330	82.57	2.04
3개년 연평균	82	1,176	10,051	8,417	-1,634	68.72	1.43

자료: 노영훈·강성훈, 『물납 매각대금의 조세수입 전환 타당성 검토』, 2014. 9. p.50 인용

- 비상장주식의 경우 2002년을 제외하고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처분손실액은 약 310억원으로 처분손실률은 약 42%로 다른 물납재산에 비해 처분손실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비상장주식의 수납시점과 처분시점의 차이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시차는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12〉 물납 비상장주식의 처분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년)

수탁연도	건수	수량	물납금액 (A)	매각금액 (B)	처분손익	회수율 (B/A)	시차
2001	15	1,009	27,738	15,758	-11,980	56.81	3.87
2002	36	21,737	141,868	142,740	872	100.61	3.94
2003	46	2,161	70,046	31,050	-38,996	44.33	3.57
2004	72	2,471	107,087	55,352	-51,735	51.69	3.19
2005	65	2,165	69,857	41,850	-28,007	59.91	2.85
2006	81	3,827	96,594	65,028	-31,565	67.32	2.96
2007	99	3,395	137,456	66,724	-70,732	48.54	2.67
2008	121	10,225	257,779	153,864	-103,915	59.69	1.85
2009	31	422	26,455	12,830	-13,625	48.50	1.65
2010	27	1,134	17,191	10,346	-6,845	60.18	1.26
2011	24	297	25,499	15,103	-10,396	59.23	1.08
2012	10	286	29,508	15,670	-13,838	53.10	0.60
연평균	52	4,094	83,923	52,193	-31,730	62.19	2.88
3개년 연평균	20	572	24,066	13,706	-10,360	56.95	0.98

자료: 노영훈·강성훈, 『물납 매각대금의 조세수입 전환 타당성 검토』, 2014. 9. p.51 인용

라. 물납제도의 문제점

1) 물납허용 판단기준의 미비

- 물납제도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조세부담을 지는 경우 금전으로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해 금전 대신 자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금전으로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지로 판단하고 있음
 - 즉,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증여로 거액의 납부세액이 발생하였고,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비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큰 경우 금전으로 세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봄

- 하지만 이는 물납제도 취지에 맞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과 비현금성 자산의 비중만 고려하여 물납 신청을 허가하고 있어 물납 신청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및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 물납제도와 연부연납의 선택가능으로 국세납부규정에 상충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액의 상속·증여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납부방법인 연부연납과 물납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세 납부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금전납부원칙에 의한다면 연부연납이 물납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납과 연부연납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과 물납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음²³⁾
 - 연부연납도 물납과 동일하게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처분하기 어렵거나 미래 자산가액 하락의 위험이 큰 경우 연부연납보다는 물납할 유인이 클 것이며 이는 금전납부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물납자산 처분손실로 인한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물납의 경우 연부연납과 달리 물납으로 조세채무가 소멸되어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부연납보다 물납을 선택할 유인을 제공함

3)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기준 미비

-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 제19조의 4에 의해 판단하고 있으며 부적당한 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도록 함

23) 김태완(2006), p.170.

-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은 지상권·전세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유가증권은 상장폐지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함
 - 이외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관리·처분이 어려운 물납재산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음
- 하지만 관련규정의 미비로 관리·처분에 대한 판단이 개별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물납허용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김태완(2006)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국세심판원의 비상장주식 물납허용 판단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II-13〉 물납주식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 판단 사례

사례1:

- 납세자 A는 1999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2002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납세자는 1999년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으로 2002년에 물납을 신청함
- 처분청은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1999년부터 3개년간 수입금액이 전혀 없고, 결손금액이 누적되어 시장성도 전혀 없으며, 물납 허가 시 은행부채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도 있는 주식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함
- 하지만 납세자는 물납한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시 증여시점의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증여 이후 주식가치가 하락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조세심판원의 2002년 판결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물납을 불허하도록 판단함(국심2002판678)

사례2:

- 처분청은 2000년 B가 양도받은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2004년에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B는 2000년 증여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함
- 처분청은 물납 신청한 주식가액이 증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에 비해 50% 이상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개업일 이후 계속 적자라는 점과 현금배당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 주식을 환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함
-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전에는 물납을 불허하도록 판단한 반면 이번 사례에서는 물납 신청 시 증여 당시보다 가치가 하락하였고, 주식 발행법인의 경영부실로 주식가액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여 물납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 결여 및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허용하도록 판단함(국심2005서1041)

- 현재 상속세에 한해 비상장주식으로만 물납이 가능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계속 허용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부적당 판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물납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에 대한 판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미비로 환가성이 없는 재산도 물납을 허용함에 따라 국고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보면 주로 법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점을 들어 물납을 허용함

〈표 II-14〉 물납토지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 판단 사례

<p>사례1: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물납 허용 여부(조심2014구37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A는 토지 등 재산을 상속받고, 납부할 상속세 전액의 토지물납을 신청함 □ 처분청은 물납한 토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린공원의 경우 매매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물납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허용 안함 □ 납세자 A가 상속받은 토지는 모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속받은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매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조세심판원은 근린공원 토지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물납재산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따라 해당토지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판단함 <p>사례2: 환가성이 없는 토지의 물납 허용 여부(조심2012중19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B는 토지를 상속받고, 납부할 상속세의 토지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한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독립이용 및 개발이 불가능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르며, 보상계획도 없는 환가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므로 관리·처분이 어렵다고 보아 물납을 허용하지 않음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의 토지에 대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없는 점,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물납을 허용하도록 판단함

4) 국고손실

- 물납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임
- 하지만 수납시점과 매각시점의 물납재산가액 차이로 처분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처분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고손실 문제가 대두됨
 - 최근 3년간 국세 물납된 부동산의 손실액은 약 119억원, 상장주식의 경우 약 49억원, 비상장주식의 경우 약 310억원으로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손실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부동산의 처분 손실률은 16%, 상장주식의 경우 약 31%, 비상장주식의 경우 약 42%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참가의 어려움으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매각처분손실액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수의매각 비율은 2010년 72.8%, 2011년 81.2%, 2012년 68.7%로 수의매각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²⁴⁾

〈표 II -15〉 물납자산의 국고손실 사례

<p>사례1: 유가증권 및 코스닥 주식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S사는 경영권승계로 발생한 증여세 697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함 □ 정부가 물납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이 2012년 S사의 부도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감 □ 2013년 매각광고 이후 2차례나 유찰되었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주식으로 물납한 69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되더라도 매각대금은 세금, 채권자의 돈을 갚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주가 돌려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임 <p>사례2: 비상장사 폐업에 따른 국고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회사인 N사의 경우 2008년 증여세 68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였으나, 2012년 6월 폐업하면서 세금을 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24) 이재영 의원실,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 10.

사례3: 비상장주식의 저가처분에 따른 국고손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나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함
- 유찰되는 과정에서 공매가액이 최초공매가액의 60%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어 수의매각 시 국고손실이 발생함
- 비상장주식의 수의매각 비중은 2012년 기준 68.7%임

- 또한 수의계약 중 본인에 의해 재취득되거나 특수관계자가 재취득하는 경우가 각각 16.2%, 62.2%인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 및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²⁵⁾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본인이 물납한 주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물납 주식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친인척·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의한 취득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시사함

5) 이용실적 저조

- 전체 물납세액 중 대부분을 상속세와 증여세의 물납세액이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실적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11년 1건의 납부실적이 있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년 평균 2건의 물납실적, 최근 2년간은 물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을 허용하는데 채권보상액이 크지 않아 물납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됨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채권보상액은 전체 토지수용보상액의 5.6%인 것으로 나타남

25) 상동

Ⅲ. 주요국의 조세납부제도 및 물납제도 운영현황

1. 일본

가. 조세납부방법

- 「국세통칙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속세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액이 10만엔을 초과하고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연부연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속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연납으로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물납제도

1) 물납가능 세목

- 일본의 경우 상속세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국세통칙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속세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액이 10만엔을 초과하고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연부연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연납으로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 연부연납으로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가 어려운 금액을 한도로 일정한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고 상속시 정산과세 또는 비상장주식의 납세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이들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산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증여자에서 수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은 물납대상으로 할 수 없음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란 생전증여를 통해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증여시에 증여세를 지불하고 상속시에 그 증여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합계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상속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 비상장주식 납세유예란 후계자인 상속인 등(경영승계상속인 등)이 경제산업성대신의 인정을 받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선대 경영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경영승계 상속인 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중 비상장주식 등(일정 부분에 한함)에 관련된 과세 가격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세 납세가 유예되는 것을 의미함

2) 물납가능 재산

가) 물납가능 재산의 종류와 우선순위

- 「상속세법」 제41조 제2항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납세의무자의 과세가액 계산의 기초가 된 재산 중 일본 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① 국채와 지방채 ② 부동산 및 선박 ③ 사채 및 주식, 증권투자신탁, 대출신탁수익증권 ④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물납가능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어야 하고 일본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이어야 함
 - 다만, 관리 또는 처분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은 물납가능 재산에서 제외함

- 일본 「상속세법」 제41조 제5항에서는 상속재산으로서 물납을 신청 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산은 국채와 지방채, 부동산 및 선박이고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채 및 주식, 증권투자신탁, 대출신탁수익증권이며 제3순위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산임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순위의 자산을 물납 신청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적당한 가액이 없고 제2순위의 자산을 물납 신청한 경우에는 제1순위의 재산으로 “적당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란 그 재산을 물납하면 거주하거나 영업을 계속하여 통상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함²⁶⁾

- “적당한 가액이 없는 경우”란 해당 물납자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납부할 때, 해당 재산의 수납가격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 즉, 수납가격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반환금액이 클 경우 해당 순위를 따르지 않아도 됨²⁷⁾

- 물납순위재산과 물납후순위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 우선순위대로 구분하고 그다음 순위 재산 중에서 물납후순위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⁸⁾
 - 따라서 물납의 순위는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짐
 - 특정등록미술품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 － 특정등록미술품이란 법률에 의해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법률에 의해 등록된 것을 말함

26) 「상속세법」 기본통칙 41-13

27) 「상속세법」 기본통칙 41-14

28) 「상속세법」 기본통칙 41-15

〈표 Ⅲ-1〉 물납가능재산의 물납 총당 우선순위

순위	물납가능 재산의 종류
1순위	① 국채, 지방채, 부동산, 선박 ② 부동산 중 후순위재산
2순위	③ 주식 등 유가증권 ④ 주식 중 후순위재산
3순위	⑤ 동산

- 일본의 경우 물납대상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물납후순위재산 및 관리처분 부적격 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물납후순위재산을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매각하기 쉬운 재산을 우선적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부적격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급적 물납 부적합 재산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가 있음

나) 물납후순위재산

- 물납후순위재산이란 물납에 총당할 적당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다음의 재산을 물납후순위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음
 - 지상권, 영구소작권 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지역권 또는 임회권이 설정된 토지
 -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 및 그 부지
 - 「토지구획정리법」에 따른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의 시행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임시환지 또는 일시이용지의 지정이 되지 않은 토지²⁹⁾
 - 실제로 납세의무자의 거주용 또는 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물 및 그 부지³⁰⁾
 - 극장, 공장, 목욕탕 등 유지 및 관리에 특수 기능을 요하는 건물 및 그 부지
 - 「건축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
 - 「도시계획법」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개발행위에 관련된 토지

29) 지정 후에도 사용 또는 수익을 낼 수 없는 땅을 포함함

30) 납세의무자가 그 건물 및 부지에 대해서 물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외

-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시가화 구역 이외의 구역에 있는 토지³¹⁾
-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서 농업용지구지역으로 정해진 구역 내 토지
- 「산림법」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 법령 규정에 의한 건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³²⁾
- 과거에 생긴 사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동산 및 이에 인접한 부동산
- 사업이 중단된(일시적 중단은 제외) 법인에 관련된 주식

다) 관리처분 부적격재산

- 물납재산의 경우 처분을 통해 금전납부와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리 및 처분이 용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관리처분 부적격재산을 물납대상 재산에서 제외함
 - 일본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관리처분 부적격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주식을 열거함으로써 물납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박훈·김태환(2007)에 따르면 2006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일본 「상속세법」에서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기준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였을 뿐이고 실무적으로 국세청의 「상속세법」 기본통달이나 재무성의 물납 등 부동산 사무취급요령 및 물납 등 유가증권의 취급요령 등에 의해 집행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명문규정은 없어 실무에서 이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 부적격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부동산
 -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31)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제외

32) 건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현저하게 좁아진 토지도 포함

-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과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통상의 사용을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동산
 -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고 공도에 통하지 않는 토지로서 「민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 차지권의 목적이 있는 땅으로, 그 차지권을 가지는 사람이 불명확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것
 - 다른 부동산³³⁾과 사회통념상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이용해야 할 부동산 또는 두개 이상의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
 - 내용연수³⁴⁾를 경과한 건물(통상의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제외)
 - 보증금의 반환에 관련된 채무 기타의 채무를 국가가 부담하는 부동산
 - 관리 또는 처분하기 위한 비용이 그 수납가격과 비교하여 과대하다고 전망되는 부동산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 양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일정한 것³⁵⁾
 - 지상권, 영구소작권, 임차권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폭력단원 등³⁶⁾, 폭력단원 등이 하는 사업활동에 지배되고 있는 자, 임원³⁷⁾이 폭력단원인 법인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 주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 부적격재산에 해당됨
-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거래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가 규정된 주식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33) 다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함

34)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명시된 내용연수를 의미함

35) ① 그 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 ② 그 위에 폐기물과 그 외의 것이 있는 부동산, ③ 생산녹지법에 규정하는 생산녹지의 관리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 것 등을 말함(「상속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36) 「폭력단원의 부당행위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7) 감사, 이사 및 이들 이외의 사람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 등

- 양도제한주식
 - 질권과 그 외 담보권의 목적이 있는 것
 -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
 - 공유에 속하는 것, 다만 공유자 전원이 그 주식을 물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폭력단원 등에 의한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폭력단원 등이 임원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 상기에 열거된 부동산 및 주식 이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이 상기의 재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3) 물납의 신청 및 요건

가)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상속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을 연납에 의해서도 금전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그 납부가 어려운 금액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⁸⁾
 - 해당 금액을 넘는 가격의 물납재산의 수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음
 - 물납 신청 재산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 중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내에 소재하는 것이어야 함
 - 물납가능재산은 ① 국채, 지방채, 부동산, 선박, ② 사채, ③ 주식(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출자증권 포함), 증권투자신탁 또는 대출신탁수익증권, ④ 동산임
 - 후순위의 재산은 세무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선순위재산 중 적당한 금액의 것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38) 2006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음.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전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국한할 것인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재산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박훈·김태완(2007), p.233)

나) 물납의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기한

- 물납 신청기한까지 물납 신청서에 물납절차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물납 신청기한까지 물납절차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물납절차 관계서류 제출기한 연장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1회당 3개월 한도로 최장 1년까지 물납절차 관계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물납 신청기한은 상속세 납부기한임

(2) 심사기간

- 물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물납 신청에 관한 요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납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각하를 실시함
 - 또한 신청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 또는 각하까지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음

(3) 물납의 재신청

-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물납 신청이 기각되지만 그 각하된 재산을 바꾸어 1회에 한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 재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연납에 의해 금전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물납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물납에서 연납으로 변경할 수 있음

(4) 조건부허가

- 오염물질 제거의 이행의무 등의 조건이 첨부되어 물납 허가를 받은 뒤 허가 재산에 토양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오염 제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물납 허가 후 5년 이내에 상기의 조치를 요구받고도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5) 이자세의 납부

-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의 허가에 의해 납부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정정한다든지 물납 신청 재산의 수납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자세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물납 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물납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는 납부기한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각하의 날 또는 간주 취하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자세를 납부하여야 함
 - 만일 스스로 물납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납부기한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체세가 발생함

4) 물납한도액

- 물납은 연납으로도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므로 물납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상속세액에서 연납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범위로 하며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41-1에서 제시하고 있음
- 종전까지 물납허가 한도액을 의미하는 ‘금전으로 납부가 곤란한 금액’이라는 요건을 엄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쉽게 물납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세법 개정에서 금전에 의한 납부 곤란 요건의 판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⁴²⁾⁴³⁾
 - 상속세액에서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물납 가능액으로 규정하고 각각 액수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현재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

42) [https://www.fp-soken.or.jp/fpinfo/assets/news_pdf/H18.07.31.pdf#search=%E7%89%A9%E7%B4%8D%E8%A8%B1%E5%8F%AF%E9%99%90%E5%BA%A6%E9%A1%8D'](https://www.fp-soken.or.jp/fpinfo/assets/news_pdf/H18.07.31.pdf#search=%E7%89%A9%E7%B4%8D%E8%A8%B1%E5%8F%AF%E9%99%90%E5%BA%A6%E9%A1%8D)

43) 2006년 세법 개정에서는 물납 수속의 원활화·명확화 등의 관점에서 물납 신청에서 허가, 각하까지 표준적 기간이나 물납 부적격 재산 내용을 법률상 명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2006년 4월 1일 이후의 상속 개시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었음

- 「상속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상속세액에서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물납가능금액으로 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였음⁴⁴⁾
- 이런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포함해서 판정함

〈표 Ⅲ-2〉 물납허가 한도액

$$\text{물납 허가 한도액} = A - \{(B - C - D) \times E + F\} + (G - F)$$

- A: 연납 허가 한도액
- B: 전년도 신고소득세 확정 신고서 등의 수지내역서에 의한 1년간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급여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급여 지급액에서 임시적인 수입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다만, 최근 사업 실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려할 수 있음
- C: 생활에 통상 필요한 1개월분의 비용에 12를 곱한 금액
- D: 사업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사업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이란 전년도의 신고소득세 확정신고의 신고내역에 의한 1년간의 사업에 관련된 경비 중 임시적인 지출 항목 및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임
- 단, 최근의 사업 실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E: 해당 물납 신청세액을 연납신청세액으로 간주한 경우 연납이 인정되는 최장 기간
- F: 생활에 통상 필요한 1개월분의 비용에 3을 곱한 금액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 당분간 필요한 자금을 가산한 금액
- G: 1년 이내에 발생이 예상되는 임시적인 금전수입(대출 반환, 퇴직금 지급의 확정 등)
- H: 1년 이내에 발생이 예상되는 임시적인 지출(사업용 자산의 구입 등)

- 연납의 허가 한도액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에서 현금, 예·저금 및 환가가 쉬운 재산 금액을 차감하고 3개월분 생활비와 운전자금을 차감한 금액임

〈표 Ⅲ-3〉 연부연납 허가 한도액

$$\text{연납 허가 한도액} = A - [(B + C + D) - (E \times 3) + F]$$

- A: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B: 현금, C: 예·저금, D: 환가가 쉬운 재산
E: 1개월분 생활비, F: 운전자금

44) 「상속세법 시행규칙」 41-1(物納の許可限度額の計算)

-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 물납허가 한도액 산출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금전 납부가 어려운지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됨
 - 산출과정에서 환가가 용이한 재산에는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해지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환가가 용이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이러한 판정은 모두 상속인별로 계산됨

가) 물납재산의 가액(수납가액)

- 물납재산을 국가가 수납할 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된 그 재산의 가액이 됨
 - 또한 소규모 택지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격 계산 특례의 적용을 받은 상속재산을 물납하는 경우의 수납 가격은 특례 적용 후의 가격이 됨

5) 물납재산의 변경 등

가) 물납재산의 변경

-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물납 신청이 각하된 경우 재산을 바꾸어 1회에 한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 재신청을 할 수 있음

나) 물납의 철회

- 물납 신청을 자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 취소와 관련된 상속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상속세의 완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체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 연납에서 물납으로의 변경

- 연납의 허가를 받은 상속세액에 대해서, 그 후에 연납 조건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분납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 부분에 한해 연납에서 물납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이러한 물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 재산을 납부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당초의 연납 조건에 따른 이자세를 납부하게 됨
- 물납에 관련된 재산의 수납가격은 해당 물납을 신청하는 때의 가격임

6) 연납제도

- 일본의 경우 물납제도뿐만 아니라 현금대체 납부방법으로서 상속세 연납(延納)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액이 10만엔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가 어려운 금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연부로 납부할 수 있음
 - 연납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세를 납부하여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가 10만엔을 넘는 것
 -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일 것
 - 연납세액 및 이자 세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함
 - 다만 연납 세액이 50만엔 미만이고 동시에 연납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연납의 허가를 받을 때는 100만엔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
 - 연납 신청기한(연납 신청에 관련된 상속세의 납부기한)까지 연납 신청서에 담보 제공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납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한하지 않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과 공동 상속인 또는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국채와 지방채
 - 사채 기타의 유가증권으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
 - 토지
 - 건물, 입목, 등기된 선박 등으로 보험에 가입된 것
 - 철도재단, 공장재단 등의 재단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 세무서장이 연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연납 신청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연납 신청 기한까지 연납신청서에 담보 제공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납 신청 기한까지 담보 제공 관계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담보 제공 관계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1회당 3개월 한도로 최장 6개월까지 담보 제공 관계 서류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연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연납 신청에 관한 요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납 신청 시한이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각하를 실시하여야 함
- 연납 담보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 또는 각하까지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음
- 연납 기간과 연납 세액에 관련된 연납이자비율은 그 사람의 상속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재산 가격의 합계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표 III-4>와 같음
- 201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연납특례기준비율이 7.3%에 못 미친 경우의 연납이자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된 특례 비율이 적용됨
 - 연납이자비율(연) \times 연납특례기준비율 \div 7.3%
 - 연납특례기준비율이란 각 분납 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의 10월부터 전년의 9월까지 매달의 은행 신규 단기대출 약정 평균 금리의 합계를 12로 나누

어 산출된 비율로 각 해의 전년의 12월 15일까지 재무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연 1%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

〈표 Ⅲ-4〉 상속세의 연납기간 및 연납이자

		연납기간 (최고)	연납이자 비율(연)	특례비율 (연)
부동산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① 동산 관련 연납상속세액	10년	5.4	1.3
	② 부동산 관련 연납상속세액(③ 제외)	20년	3.6	0.8
	③ 계획별목의 비율이 20% 이상인 계획 별목에 관련된 연납 상속세액	29년	1.2	0.2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④ 동산 관련 연납상속세액	10년	5.4	1.3
	⑤ 부동산 관련 연납상속세액(⑥ 제외)	15년	3.6	0.8
	⑥ 계획별목의 비율이 20% 이상인 계획 별목에 관련된 연납 상속세액	20년	1.2	0.2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⑦ 일반연납상속세액(⑧,⑨,⑩ 제외)	5년	6.0	1.4
	⑧ 임목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임목 관련 연납상속세액(⑩ 제외)	5년	4.8	1.1
	⑨ 특별녹지보전지구 내의 토지 관련 연 납상속세액	5년	4.2	1.0
	⑩ 계획별목의 비율이 20% 이상인 계획 별목에 관련된 연납 상속세액	5년	1.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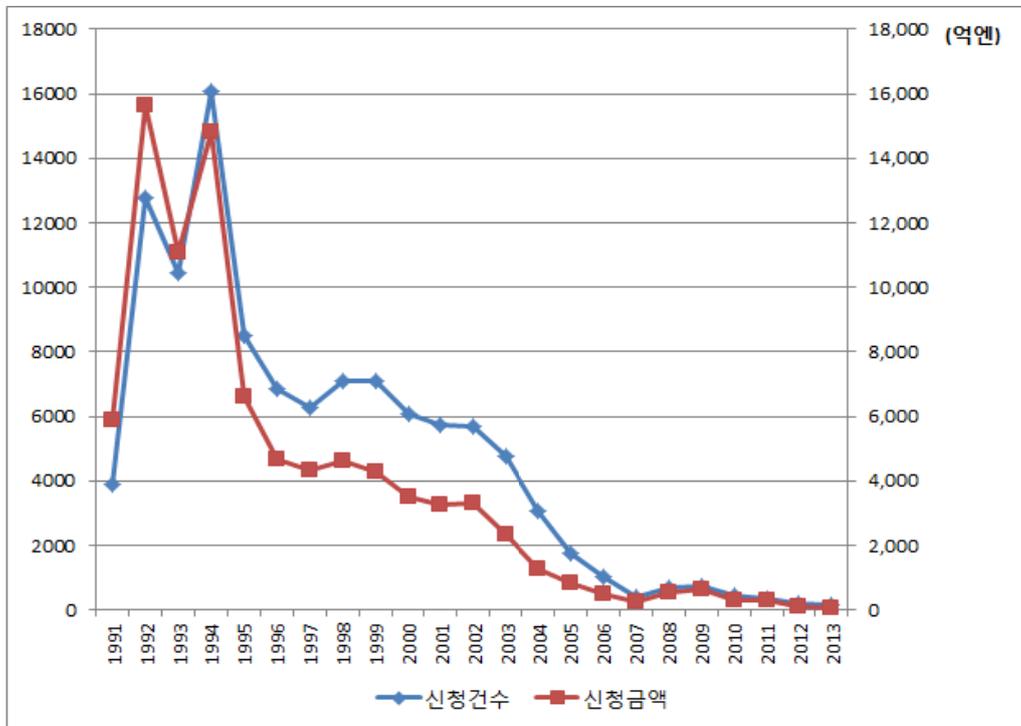
주: 이 표의 “특례 비율”은 2015년 1월 1일 현재의 연납특례기준비율 1.8%로 계산한 것임
자료: 일본 국세청, 「No.4211. 相続税の延納」

다. 물납현황

- 상속세의 물납 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1992년 물납 신청건수가 12,000건에 달하는 등 물납 신청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매년 6,000건 이상의 신청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액도 6,000억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상속세의 물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일본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가가 공시지가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물납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⁴⁵⁾

- 2000년대에는 신청건수 및 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물납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음
- 2006년 상속세 물납제도는 물납부적격자산의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음⁴⁵⁾
- 2006년 1,036건에서 세법개정 이후인 2007년도에는 383건으로 감소함

[그림 Ⅲ-1] 물납 신청건수 및 금액 추이



- 최근 10년간의 상속세 물납처리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처리된 건수 중 약 73% (2004~2013년 평균)가 허가 처리되었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허가 처리된 금액의 비율이 건수와 유사한 74% 정도임

45) 주노종·이영환(2012)에서는 “1990년대에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지가의 급락과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가 급증하여 상속세 물납액이 상속세 총액의 약 60%에 달할 정도였다”고 기술하고 있음

46) 주노종·이영환(2012)

〈표 Ⅲ-5〉 상속세의 물납처리 현황(건수)

(단위: 건, %)

연도	신청	처리					미처리
		허가		취소	각하	소계	
		건수	비율				
2004	3,065	3,639	68.5	1,651	24	5,314	5,968
2005	1,773	2,730	69.6	1,169	21	3,920	3,781
2006	1,036	2,094	70.5	861	16	2,971	1,846
2007	383	1,114	81.3	234	22	1,370	859
2008	698	704	80.0	149	27	880	677
2009	727	711	77.8	149	54	914	490
2010	448	503	77.1	103	46	652	286
2011	364	317	71.7	98	27	442	208
2012	209	205	67.2	55	45	305	112
2013	167	132	66.3	38	29	199	80

자료: 일본 국세청, “相続税の物納処理状況等”

(https://www.nta.go.jp/tetsuzuki/nofu-shomei/enno-butsumo/jokyo/01.htm)

〈표 Ⅲ-6〉 상속세의 물납처리 현황(금액)

(단위: 억엔, %)

연도	신청	처리					미처리
		허가		취소	각하	소계	
		건수	비율				
2004	1,288	1,899	62.1	1,151	9	3,059	4,777
2005	817	1,464	62.8	835	32	2,331	3,262
2006	472	1,334	71.4	525	9	1,869	1,866
2007	235	927	77.8	254	10	1,191	910
2008	564	693	84.0	109	23	825	650
2009	654	773	84.8	108	32	912	392
2010	302	371	79.1	60	38	469	225
2011	310	232	72.0	76	13	322	212
2012	87	183	75.9	47	11	241	58
2013	79	54	73.0	18	2	74	62

자료: 일본 국세청, “相続税の物納処理状況等”

(https://www.nta.go.jp/tetsuzuki/nofu-shomei/enno-butsumo/jokyo/01.htm)

- 물납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이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물납재산 중 건수기준으로 평균 88%, 금액기준으로 평균 79%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토지의 물납 신청건수가 전년도 93.1%에서 59.4%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유가증권의 신청건수는 전년도 5.3%에서 37%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토지의 물납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2006년 세법개정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됨에 따라 유가증권 물납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2012년의 경우에는 토지의 물납 신청건수가 81.3%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50.6%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 상대적으로 유가증권의 물납 신청금액이 47.7%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속적인 현상은 아님

- 전반적으로 2007년 이후 기간에 토지의 물납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유가증권의 물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2007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된 것과 부동산 가격하락이 진정된 시기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됨
 - 2008년 유가증권의 물납 건수와 금액이 각각 37%, 35.3%를 차지하였음
 - 2012년 유가증권의 물납 건수의 비중은 9.6%에 불과하지만 금액 비중은 47.7%를 차지하는 등 유가증권의 물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Ⅲ-7〉 물납재산 유형별 현황(건수)

(단위: 건, %)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건수
2004	3,542	97.2	37	1.0	62	1.7	2	3,643
2005	2,686	96.6	46	1.7	43	1.5	6	2,781
2006	2,036	96.2	28	1.3	51	2.4	2	2,117
2007	1,106	93.1	19	1.6	63	5.3	0	1,188
2008	1,676	59.4	26	0.9	1042	37.0	76	2,820
2009	1,541	87.3	11	0.6	207	11.7	6	1,765
2010	1,233	91.9	21	1.6	88	6.6	0	1,342
2011	877	84.1	8	0.8	158	15.1	0	1,043
2012	456	81.3	15	2.7	54	9.6	36	561
2013	302	97.7	4	1.3	3	1.0	0	309

자료: 일본 국세청

〈표 Ⅲ-8〉 물납재산 유형별 현황(금액)

(단위: 백만엔, %)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2004	187,312	98.6	446	0.2	1,861	1.0	278	189,897
2005	137,230	93.7	405	0.3	6,446	4.4	2358	146,439
2006	119,178	89.3	504	0.4	12,692	9.5	1074	133,448
2007	81,397	87.9	285	0.3	10,906	11.8	0	92,588
2008	44,219	63.8	534	0.8	24,466	35.3	47	69,266
2009	49,784	64.4	94	0.1	26,471	34.2	943	77,292
2010	27,359	73.7	248	0.7	9,520	25.6	0	37,127
2011	17,309	74.5	102	0.4	5,828	25.1	0	23,239
2012	9,244	50.6	177	1.0	8,712	47.7	150	18,283
2013	5,025	92.7	94	1.7	303	5.6	0	5,422

자료: 일본 국세청

- 일본의 경우, 연부연납으로도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물납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부연납의 신청 현황과 물납 신청 현황이 서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부연납과 물납이 상속 건수 및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고자 함
- 2004~2013년 기간 중에 연부연납과 물납이 상속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부연납의 경우, 2004년에 건수와 금액이 각각 6.13%, 19.34%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0.78%, 2.17%를 차지하고 있음
 - 물납의 경우에도 2004년에 건수와 금액이 3.25%, 0.18%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0.10%, 0.004%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납부방식 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연부연납과 물납의 비중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고 상속세 납부에서 물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임을 알 수 있음

〈표 Ⅲ-9〉 상속 중 물납 및 연부연납의 비율

(단위: 건, 백만엔, %)

	상속 ¹⁾		연부연납				물납			
	건수 ²⁾	금액 (십억엔)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04	111,820	1,065	6,851	6.13	205,996	19.34	3,639	3.25	1,899	0.18
2005	116,309	1,156	5,026	4.32	147,876	12.79	2,730	2.35	1,464	0.13
2006	115,389	1,223	4,742	4.11	134,994	11.04	2,094	1.81	1,334	0.11
2007	118,582	1,266	2,926	2.47	109,059	8.61	1,114	0.94	927	0.07
2008	120,038	1,251	2,511	2.09	90,034	7.20	704	0.59	693	0.06
2009	115,574	1,163	2,221	1.92	76,157	6.55	711	0.62	773	0.07
2010	122,705	1,175	1,941	1.58	66,508	5.66	503	0.41	371	0.03
2011	125,033	1,251	1,369	1.09	46,641	3.73	317	0.25	232	0.02
2012	126,371	1,244	1,282	1.01	43,992	3.54	205	0.16	183	0.01
2013	130,438	1,536	1,011	0.78	33,322	2.17	132	0.10	54	0.00

주: 1) 당해연도 납부세액 기준임

2) 건수는 상속인 수를 의미함

자료: 일본 국세청

2. 영국

가. 조세납부방법

-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경우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세만 금전납부 외에 국채, 토지, 건물, 문화유산의 물납을 허용함
 - 금전납부란 현금, 수표, 체크, 은행계좌에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함
 - 영국의 「상속세법」(Inheritance Tax Act) 상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음⁴⁷⁾
 - 본인 은행계좌에서 납부
 - 상속인과 공동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
 - 상속인 계좌에서 납부
 - 상속인의 국영은행 저축계좌에서 납부(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
 - 국채(government stock)로 납부
 - 국가 문화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납부

- 일시에 발생한 거액의 상속세 납부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일부 재산의 경우 10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함
 - 분납이 허용되는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건물, 주식, 기업의 순자산, 농업용 토지 및 자산이 있으며 상속재산별로 분납허용조건이 상이함
 - 상속재산이 상장주식인 경우 주식이 자회사를 50% 이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납 가능
 -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이 20,000유로를 초과하고 전체 주식가액의 10%를 차지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함
 -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자산가액을 제외한 기업의 순자산액에 대해서만 분납을 허용함

- 기타 조세납부방법으로 세금기탁확인제도(Certificate of Tax Deposit scheme)가 있

47)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inheritance-tax/overview>)

으며, 이는 영국 국세청에 일정금액을 미리 기탁해두고 나중에 조세 채무 발생 시 기존에 기탁한 금액으로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세금기탁확인제도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이자 부여와 가산세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10만유로를 초과하는 조세기탁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됨
 - 세금기탁이 납부해야 할 조세의 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납부기한 후 조세를 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세금을 기탁하려는 자는 최초 기탁 시 500유로 이상 기탁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최소 250유로 이상 혹은 500유로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기탁할 수 있음

나. 물납제도

- 영국은 모든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에 한해 재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함(IHTA 230(1))
- 물납이 허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국가문화유산이 있음
 - 토지의 경우 National Trust⁴⁸⁾ 또는 국립공원협회(national park authorities)와 같은 기관이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함(IHTA 230(2))
 - 건물의 경우 영국왕실, 랭게스터영지, 콘월영지와 같은 영국왕실 소유영지에 속한 건물인 경우 물납이 가능함(IHTA 230(3))
 - 국가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미술품·책·원고·예술작품·과학발명품 등 국가적, 과학적, 역사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물품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IHTA 230(4))
- 물납 시 자산가액은 물납자산을 제공한 날 또는 물납자산이 허용된 날의 시장가액으로 함⁴⁹⁾

48)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 또는 문화자산을 영구히 보존·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 국가문화유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승인되었더라도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문화유산이 국세청에 인도된 후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음⁵⁰⁾

3. 프랑스

가. 조세납부방법

-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납부방법은 현금, 수표 우편환 등임⁵¹⁾
 - 근로소득세의 원천세 또는 주민세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해 자동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보증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납세보증은 신용납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자가 가산금 형태로 부가됨
 - 간접세 등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과세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정액의 공탁을 하여야 함
 - 상속세에 한해 납부기한 연기 및 예술품의 물납이 허용됨
 - 예술품의 물납은 문화통신부의 허가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과세관청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분할납부할 것을 허용함⁵²⁾
 - 최대 6개월 단위로 5년에 걸쳐 납부하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가 부과됨

49) Revenue Law: Introduction to UK tax law, John Tiley & Glen Loutzenhiser, 2012.

50)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paying-inheritance-tax/by-transferring-national-heritage-property>), 2015. 7. 1. 접속

51) 안창남(2009), pp.362-363에서 요약 정리함

52) French Inheritance Tax, "Payment of French Inheritance Taxes", <http://www.french-property.com/guides/france/finance-taxation/inheritance/taxes/payment/>

- 요건이란,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의 50% 이상이 비현금성 자산(non-cash asset) 이어야 함
 - 비현금성 자산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업용자산, 특허권 등임
-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10년까지 연장됨
- 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기간제한이 없는 소유권(freehold title)을 갖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에 대해 기간적인 제한이 있는 소유권(reversionary interest, life interest)을 지님

나. 물납제도

- 상속세의 경우, 작품, 책, 수집품, 예술적 가치 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 국가의 산림지역에 통합될 수 있는 숲, 자연지역의 건물 등의 인도로 납부할 수 있음⁵³⁾
 - 상속세액이 적어도 10,000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물납은 납부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고 이 기간은 3개월 연장 가능함
 - 상속세의 물납은 문화부 및 예산부의 허가가 필요함⁵⁴⁾

4. 독일

가. 조세납부방법

- 독일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조세채무 이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채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납부세액의 전체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납부이연을 허용함⁵⁵⁾
 - 납부이연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허용함

53)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1716조 I

54) 김용락(2014), p.41.

55) 독일 「조세기본법」 제222조, 김용락(2013), p.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승계의 경우 사업용 자산이나 농업업용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10년까지 납부이연하며 이에 따른 가산금은 없음⁵⁶⁾

나. 물납제도

- 독일의 경우 상속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 시 미술품, 과학발명품, 도서, 극본 등 예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음(조세기본법 224a (1))
 - 단, 물납이 가능한 자산은 예술적, 역사적, 학문적으로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 물납을 하려는 납세자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물납 신청을 해야 하며, 국세청이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함(조세기본법 224a (2))
- 국세청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이 국세청에 이전된 날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물납허가 여부가 통지되기 전까지 조세채무는 이연됨(조세기본법 224a (3), (4))

56)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김용락(2013), p.42.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제한적으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물납가능 세목과 대상재산을 제외한 항목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한 내용만 기술함
 - 물납가능 세목과 대상재산을 제외한 항목은 물납 신청요건, 물납수납가액 결정 및 한도액, 물납 부적격재산임

가. 물납가능 세목과 대상재산 및 신청요건

1) 물납가능 세목

- 물납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운영 중이며,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속세에 한해서 독일은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물납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는 여러 세목에서 물납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서 물납제도를 운영 중임

2) 물납대상재산

- 물납가능재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가증권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물납허용 재산이 범위가 넓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일본의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선박, 기계장치와 같은 동산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물납충당 재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장유가증권이 부동산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 선박이 주식 등 유가증권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공채,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국채·지방채·부동산·선박, 주식 등 유가증권, 동산 순으로 물납에 충당됨
-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역사적·예술적·학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등의 물납만 허용하고 있어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문화유산 외에도 국채, 공익목적으로 활용될 토지, 영국왕실 소유영지에 있는 건물의 물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독일에 비해 물납이 허용되는 자산범위가 넓음
- 조사대상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물납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는 차이가 있음
-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은 국유재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익목적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물납제도의 목적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액의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물납 신청요건

- 우리나라의 경우 물납과 연부연납 조건 충족 시 물납과 연부연납 중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연부연납의 방법으로도 금전으로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금전으로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과 물납 신청을 위한 세액요건이 동일하여 요건 충족 시 물납을 선택할 유인이 더 큰 반면 일본의 경우 연부연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금전납부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표 IV-1〉 물납가능 세목과 물납가능자산 및 신청요건

	한국 ¹⁾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물납 가능 세목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재산세
물납 가능 자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물납에 총당함 ① 국채, 공채 ② 상장유가증권 ²⁾ ③ 국내소재부동산 ④ 비상장주식 ³⁾ ⑤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토지	아래 순서에 따라 물납에 총당함 ① 국채, 지방채, 부동산, 선박 ② 주식 등 유가증권 ③ 동산	국채 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단체가 매수하기로 한 경우 영국왕실 소유영지에 속한 건물 역사적·예술적가치가 높은 자산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산 숲이나 자연지역의 건물 등	예술적·역사적·학문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신청 요건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50%를 초과하고, ② 상속·증여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① 연부연납으로도 금전납부가 어려운 사유 ② 금전으로 납부가 어려운 금액	없음	① 상속세액이 10,000유로 이상 ② 문화부 및 예산부의 허가	없음

주: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본 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에 관해서만 내용을 기술함
2)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함
3) 비상장주식은 상속세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①~③의 자산에 의한 물납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함

나.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및 물납 한도액

□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과세액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된 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일 이후 시가 하락 등 몇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한 예외규정은 두고 있지만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예외규정은 없음
- 물납 한도금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도 제한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 전액을 물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함
- 그러나 일본은 개인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고 이 중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 물납이 허용됨
 -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예금 및 환가가 용이한 재산에서 3개월 분 생활비와 1개월의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제외한 금액임

〈표 IV-2〉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및 물납 한도금액

	한국	일본
물납재산 수납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 - 예외: 평가일 이후 시가하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상속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 - 예외: 상속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의 물납인 경우 특례 적용 후의 재산가액
물납 한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 - 단, 물납충당재산의 물납순서를 부적절하게 의도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물납재산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한도금액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납허가한도액 = 연납허가한도액 - [(연간수입 - 연간생활비 - 연간운전자금) × 최장연납기간 + 3개월 생활비] + [연간임시수입 - 연간임시지출] - 연납허가한도액 = 상속세액 - [(현금 + 예·적금 + 환가가 쉬운 재산) - (3개월 생활비 + 운전자금)]

다. 물납 부적격자산

- 물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분이 곤란한 자산을 수납한 경우 세수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임
- 따라서 물납 적격자산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물납 부적격자산을 규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물납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부적당성으로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자산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물납 부적격 자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물납 허가를 배제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리처분 부적격자산을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부적격자산의 범위가 우리나라의 경우 특징적인 일부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관리 처분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표 IV-3〉 한국과 일본의 물납 부적격자산

	한국	일본
법규정	상증세령 제71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
부동산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 및 부수토지 ¹⁾ ⑤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부동산 ②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③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④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과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통상의 사용을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동산 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고 공도에 통하지 않는 토지로서 민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⑥ 차지권의 목적이 있는 땅으로, 그 차지권을 가지는 사람이 불명확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것 ⑦ 다른 부동산과 사회통념상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이용해야 할 부동산 또는 두 개 이상의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 ⑧ 내용연수를 경과한 건물 ⑨ 보증금의 반환에 관련된 채무 기타의 채무를 국가가 부담하는 부동산 ⑩ 관리 또는 처분하기 위한 비용이 그 수납가격과 비교하여 과대하다고 전망되는 부동산

〈표 IV-3〉의 계속

	한국	일본
		⑪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⑫ 양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⑬ 지상권, 영구소작권, 임차권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폭력단원 등, 폭력단원 등이 하는 사업활동에 지배되고 있는 자, 임원이 폭력단원인 법인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유가증권	①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주식	①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거래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가 규정된 주식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② 양도제한주식 ③ 질권과 그 외 담보권의 목적이 있는 것 ④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 ⑤ 공유에 속하는 것, 다만 공유자 전원이 그 주식을 물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⑥ 폭력단원 등에 의한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폭력단원 등이 임원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주: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규정되어 있음

라. 물납현황 비교

- 〈표 IV-4〉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물납현황을 비교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상속세액의 물납만 허용하고 있어 상속세액의 물납현황만 비교함
- 상속세 납부액에서 물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2013년 기간에 연평균 0.21%인 반면 일본의 물납세액 비중은 0.06%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물납 실적이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우선 납부하도록 하고 연부연납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해 물납을 허용하기 때문에 물납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물납보다 연부연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일본세법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연부연납세액 비중도 살펴본 결과 일본의 연부연납세액 비중은 평균 6.81%로 우리나라의 32.7%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의 경우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라도 담보제공 및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연부연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재산종류별 물납세액 비중을 보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의 물납 비중이 유가증권에 비해 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유가증권의 물납 비중이 연평균 22.13%인 반면 부동산의 물납 비중은 77.37%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의 물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의 물납 비중이 연평균 44.96%, 부동산의 물납 비중은 54.67%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물납가능자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동산 등이 유가증권에 우선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물납가능자산의 우선순위는 상장유가증권이 부동산에 우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표 IV-4〉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 물납현황 비교¹⁾

(단위: %)

	상속세액 대비 물납세액		상속세액 대비 연부연납세액 ²⁾		재산종류별 물납액 비중 ²⁾			
					유가증권		부동산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2005	0.17	0.13	-	12.79	-	4.40	-	94
2006	0.13	0.11	27.9	11.04	71.2	9.50	28.8	89.7
2007	0.41	0.07	20.8	8.61	53.6	11.8	46.4	88.2
2008	0.51	0.06	30.4	7.20	45.9	35.3	53.7	64.6
2009	0.11	0.07	48.1	6.55	31.8	34.2	68.1	64.5
2010	0.10	0.03	36.0	5.66	21.0	25.6	79.0	74.4
2011	0.17	0.02	33.9	3.73	40.2	25.1	59.8	74.9
2012	0.11	0.01	40.2	3.54	46.2	47.7	51.5	51.6
2013	0.18	0.00	24.5	2.17	49.9	5.60	50.1	94.4
연평균	0.21	0.06	32.7	6.81	44.96	22.13	54.67	77.37

주: 1) 일본의 경우 상속세액의 물납만 허용하고 있어 상속세액의 물납현황만 비교함
 2)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데이터를 공시하고 있어 2006년 데이터부터 제시하였으며, 또한 일본의 경우 동산도 물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산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동산의 물납비중은 위 표에서 제외함

2. 시사점

가. 대체적 납부수단으로서의 물납제도

-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 대상 국가에서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세 외의 세목에서는 물납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에 국한해서 물납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전체 34개국 중 19개국에 불과하고 이 중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물납제도를 조세납부제도로서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물납제도는 일반적인 물납제도의 목적인 조세채권의 확보 및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하는 물납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제비교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물납으로 인한 국고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 가능한 현금납부를 권장함으로써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즉, 물납으로 납부하기 이전에 현금납부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현금납부 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물납이 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물납제도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현금납부의 대체적 납부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납부방법의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임
 - 즉, 즉시 현금납부가 우선되어야 하고 현금납부가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인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을 적용하고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으로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 다만, 현금납부가 불가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나. 물납 신청요건의 구체적인 판단규정 마련

- 물납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액의 납부세액을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해야 하나 현행 세법에서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음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금전납부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의 판단기준을 법으로 규정하여 물납허용조건을 강화함
 -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현금 및 예·적금 등 총 합계액에서 납세의무자와 가족의 3개월 생활비와 납세의무자의 계속사업을 위한 1개월 운전자금을 차감하여 금전납부가능 여부를 판단함
 - 위의 규정에 따라 당장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임시수입과 임시지출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물납을 허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물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물납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정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국고손실 방지를 위한 물납의 적용 범위 조정

- <표 II-5>를 보면, 2013년 전체 물납세액 중 상속세가 45.84%, 증여세가 51.38%를 차지하고 있어 증여세의 물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표 II-8>의 증여세 물납재산의 구성을 보면, 2006~2013년 평균으로 부동산이 1.96%, 주식이 98.04%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증여보다는 주식 증여에 의한 물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유가증권의 물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 1999년도부터 상장주식을 물납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고, 2008년부터는 비상장주식도 물납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음
 - 따라서 현재 원칙적으로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물납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중 처분이 제한된 주식, 비상장주식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됨
 -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제한된 2008~2013년 기간에도 재산 유형별 증여세 물납현황을 보면 전체 증여세 물납에서 주식이 평균 96.53%로 나타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에는 주식의 물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수납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⁵⁷⁾
 -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물납한 납세의무자 본인이 수납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매를 통해 해당 주식을 재취득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었음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비상장주식 매각액에서 본인이 물납한 해당 주식을 공매에 의해 재취득한 비율은 각각 13%, 18.5%, 14.7%, 28.4%로 나타남
- 현재 처분이 용이하지 않는 재산 또는 시가 산정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예외적인 물납 허용이 국고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2012년 현재, 증여세 물납재산 중 상장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18억원, 비상장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86억원으로 나타남⁵⁸⁾

5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신설(2011. 4. 1.)

58) 노영훈·강성훈(2014), pp.55-56.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제한된 2008~2012년 기간의 평균을 보더라도, 상장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45억원, 비상장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225억 원에 달함
- 물납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 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으로 강제할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하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세액 납부를 허용하는 것임
 - 이러한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의 개시 시점을 정할 수 없지만 증여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의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는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 즉, 상속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현금으로 강제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한해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발생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므로 납세자에게 물납이라는 납세편의를 제공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함
- 증여세의 경우 물납을 허용해야 할 정당성이 약하고 주식의 증여로 인한 국고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물납은 장기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라. 동산의 물납 허용에 대한 검토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산도 물납 대상자산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음
 - 동산의 경우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등의 자산과 문화재 및 예술품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국제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와 같은 동산을 물납대상 자산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 김태완(2008)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와 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선박·기계·기구를 물납대상 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선박이나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경우 시장이 협소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비해 매각이 어렵고 「국세징수법」 등에서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동산에 대한 물납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자동차나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굳이 물납할 필요성이 적고 선박과 항공기 같은 동산의 경우 과세관청이 보관상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동산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시장이 협소하여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기에 때문에 이러한 자산에 대해 물납을 허용할 경우 세수손실 문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문화재 및 예술품과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문화재 및 예술품의 물납을 통해 국가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재 및 예술품에 대해 오히려 상속세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어 물납의 필요성이 없고 해당 자산이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임⁵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와 보호구역 내 토지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징수를 유예하고 있음

59) 김태완(2008)에 의하면, 문화재의 경우 물납에 의해 국가로 귀속시켜 국가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문화재의 경우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 자산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단순히 물납의 여부가 아닌 문화재의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상속세의 전체적인 틀에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상속세 비과세에서 배제하고 물납을 허용하여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화재 외의 예술품 중 징수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물납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미술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 처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의 세습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산이므로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술품 외에도 예술품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미술품만을 허용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거래 시장이 협소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물납실적이 저조한 세목의 물납제도 폐지 고려

-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보상으로 인한 양도인 경우 일시적으로 거액의 양도세액이 발생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물납세액 중 약 99% 정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세액이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물납세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법인세의 경우 최근 8년간 2011년에 1건의 물납실적이 있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1년까지 평균 2건, 2012년부터는 물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 수용 시 금전보상이 원칙이며, 채권보상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는 점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금전으로 납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됨
 - 채권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보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할 수 있지만 2013년 기준 전체 보상금액 중 채권보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인 것으로 나타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예측이 가능하다는 점과 과세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납제도의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물납건수가 평균 8건 정도로 지속적으로 물납실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당장의 물납제도 폐지보다는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물납 허용 자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공익목적 사용에 적합한 부동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물납 허가 시 무상관리 전환이 가능한 부동산만 물납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용락,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2013. 12.
- 김태완, 「조세법상 물납제도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박사 학위논문, 2008. 2.
- 노영훈·강성훈, 『물납 매각대금의 조세수입 전환 타당성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박 훈·김태완, 「일본 상속세 물납제도의 변화와 그 시사점」, 『조세학술논문집』, 제23집 제2호, 2007.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주노종·이영환, 『현행 조세징수 수단인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일 물납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2.

John Tiley & Glen Loutzenhiser, *Revenue Law : Introduction to UK tax law*,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독일법령 사이트(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o)

영국 국세청(<http://www.hmrc.gov.uk/>)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making.law.go.kr/main>)

삼일인포마인(<http://samili.com>)

세법연구 15-01
물납제도 운용현황 및 주요국과의 비교 연구

2015년 8월 23일 인쇄
2015년 8월 30일 발행

저 자 이상엽 · 송은주 · 김민경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778-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